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정 정 회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24-16
--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22.

발 의 자 : 정정희, 이충현, 박학용,
김현진, 박성호, 전철규

1. 제안이유

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일몰제를 도입하고, 의회 동의 및 보고를 강화하는 한편,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민간위탁 일몰제의 도입 (안 제5조의2)
- 나. 의회동의 기간 축소 및 보고 강화 (안 제7조제2항, 안 제8조제9호, 안 제22조제4항)
- 다. 수탁기관 선정시 우선선정 대상의 지정 (안 제10조의2)
- 라.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공무원 위원의 비율 제한 (안 제12조제2항)
- 마. 위탁기간의 축소 및 일시 연장 사유의 신설(안 제15조)
- 바.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도입 (안 제25조의2)
- 사. 맞춤형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함(안 제1조

및 제2조제4호 등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나. 협조부서 : 기획예산과

다. 입법예고 : 2024. 1. 22. ~ 1. 27.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다시”를 “다시 선정하여”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민간위탁 일몰제) ①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2회차 체결한 사무는 해당 2회차 협약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계속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는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차와 관계없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.

제7조제2항 단서 중 “10년”을 “6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민간위탁 성과보고서(위탁사무 및 운영 평가 포함)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우선선정 대상)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,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를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”를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전단 중 “5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5년 이내로”를 “위탁기간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위탁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다.

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
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점검·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 작성 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인센티브 및 페널티) ①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비용보전 및 연장계약 등(이하 “인센티브”라 한다.) 또는 위탁계약 해지·감액(이하 “페널티”라 한다.) 등을 부여할

수 있다.

②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의 기준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(생략)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8조(민간위탁 동의안) 구청장이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8. (생략)

로 한다. 다만, 계속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는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차와 관계없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.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----- 6년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민간위탁 동의안) 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9. (생 략)

<신 설>

제12조(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(생 략)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·2. (생 략)
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
4. ~ 6. (생 략)

③ ~ ⑧ (생 략)

제15조(위탁계약의 체결 등) ① (생 략)

9. 민간위탁 성과보고서(위탁사무 및 운영 평가 포함)

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제10조의2(우선선정 대상)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,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를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.

제12조(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위촉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-----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위탁계약의 체결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
되,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
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
다.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
내로 한다. <단서 신설>

③ (생략)
<신설>

제22조(지도·점검 등) ① ~ ③
(생략)
<신설>

<신설>

② ----- 3년 -----

--. ----- 위탁기
간으로 --. 다만, 위탁기간 등에
관하여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
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
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
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
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
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
다.

제22조(지도·점검 등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점검
·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 작성
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
한다.

제25조의2(인센티브 및 페널티)

①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중
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비
용보전 및 연장계약 등(이하
“인센티브”라 한다.) 또는 위탁
계약 해지·감액(이하 “페널티”

라 한다.) 등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의
기준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
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